

##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

### 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

-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
- 전파감시(Radio Spectrum Monitoring)
- 불법무선국 조사·단속
- 전파교란 대응 및 전파혼신 처리
- 국내·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

### 신속·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

- 무선국 허가·검사
- 방송국 검사
- 통신사업자 등록·신고
-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
-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

###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

-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
- 불법감청설비 조사
- 전기통신설비 제공 감독
-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
- 방송편성비율 확인
-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기준 준수 관리

### 전파 이용 촉진

-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
- 전파혼신 조사
- TV 수신환경 조사
-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
- 위성 전파환경 조사



### 국제 교류 협력

- 인접국가 전파관리 협력
- 국제 표준화 활동
- 전파관리 분야 국제교류
-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
### 기술 교류 및 연구 지원

- 전파통신 기술 지원
- 위성전파 측정 정보 제공

##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!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.



### 중앙전파관리소는

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,  
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.  
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 
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 
안전한 방송통신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인터넷 전자민원 : [emsit.go.kr](http://emsit.go.kr)  
민원상담 : 080-700-0074



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중앙전파관리소	(05830)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	02-3400-2000
위성전파감시센터	(17413)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	031-644-5900
서울전파관리소	(08249)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	02-2680-1700
-서울북부사무소	(11604)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152	031-849-5800
부산전파관리소	(46703)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00
광주전파관리소	(58214)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00
강릉전파관리소	(25428)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980
대전전파관리소	(35283) 대전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	042-520-4100
-당진사무소	(31754)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	041-360-2800
대구전파관리소	(42043) 대구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00
전주전파관리소	(55316)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070
제주전파관리소	(63037)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00
청주전파관리소	(28567)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	043-261-5811
울산전파관리소	(45013)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10

대한민국 전파 · 방송통신의 중심 중앙전파관리소

# 올바른 무선국 이용 안내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 
중앙전파관리소

# 무선국은 허가·신고하고 사용합니다

■ 생활무전기를 제외한 모든 무전기와 전파응용설비 (주파수 : 90kHz 이상, 전력 : 50W초과)는 허가(신고)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.

- 간이무선국, 기지국, 고정국, 아마추어국 등
- 산업 과학 · 의료용 전파응용설비

■ 허가 · 신고 없이 이용 가능한 무선기기는?

-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랜, 무선전화기, 생활무전기, 자동차원격시동기, 무선조정 장난감 등

■ 허가 · 신고 방법은?

- 무선국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전파관리소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청

문의 · 상담

☎ 080-700-0074 (무료)

홈페이지: crms.go.kr

인터넷전자민원: emsit.go.kr



# 불법무선국을 운용하지 맙시다

■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하면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■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면?

-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벗어나 운용하면?

-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 불법 무선국(무선기기) 사용 사례

사례 1

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외국산 생활무전기 사용

적합성 평가를 받은 생활무전기는 허가·신고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. 다만, 주파수, 출력 등이 국내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외국산 생활무전기를 사용 시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사례 2

적합성 평가를 받은 70Mhz, 170Mhz, 200Mhz, 900Mhz 등의 무선마이크는 허가·신고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이용유예기간이 종료된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는 '21년 1월 1일 이후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※ '20년 12월 31일 부터 700Mhz 대역(740~752Mhz) 무선마이크의 이용유예기간 종료

사례 3

'19년부터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·아날로그 변조방식 겸용무전기는 신규로 허가(신고)가 불가능하며, 허가받지 않고 사용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다만, '18년 말 까지 재허가(신고)를 받은 무전기는 수명 만료시 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
※ '18년 12월 31일부터 아날로그(디지털 아날로그 겸용) 무전기의 허가 신고 종료

# 무선국 운용은 이렇게

■ 무선통신은 필요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고,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명확해야 합니다.

■ 통신내용에 군사비밀, 국가외교 비밀, 국가산업정보에 관한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통신보안에 주의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.

■ 무선통신은 자국의 호출부호, 호출명칭 및 표시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.

전파이용 불편사항은  
중앙전파관리소 고객센터로!

☎ 080-700-0074 (무료)

라디오, TV에 전파장애를 받는 경우

산업시설, 의료장비, 가전제품이  
외부전파로 인해 장애를 받는 경우

통신망에 혼신, 전파장애가 발생한 경우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 
중앙전파관리소

홈페이지 : crms.go.kr  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: emsit.go.kr  
전파 · 방송통신민원 : 080-700-0074